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11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김종민 · 김한규 · 손 솔
박균택 · 이수진 · 윤종오
전종덕 · 허성무 · 한창민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에 의해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국민 경제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거래 후에 정산하는 관행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불투명하며, 이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설정의 요건 · 기간 등 설정 기준 ·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후단, 제38조의3, 제45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설정 요건·기간·대상 유종 및 지역별 설정 금액 등 최고액 또는 최저액의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한다.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각각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로 하고,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석유제품 공급가격 고지의무 등)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고지된 공급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에 고지된 공급가격이 아닌 가격

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제품 공급가격의 고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 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 ----- ----- ----- ----- ----- ----- ----- ----- ----- ----- <u>. 이 경우 그 설정 요건·기간·대상 유종 및 지역별 설정 금액 등 최고액 또는 최저액의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한다.</u>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석유제품 공급가격 고지의무 등) ① <u>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u>

<u>제38조의3 · 제38조의4</u> (생략)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u><신설></u> <u>1. ~ 10.</u> (생략)	<u>러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u> <u>②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고지된 공급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u> <u>제38조의4 · 제38조의5</u> (현행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와 같음) 제45조(벌칙) ----- ----- -----. <u>1.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u> <u>2.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에 고지된 공급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한 자</u> <u>3. ~ 12.</u> (현행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